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사례진술 :

원고는 실업보험 혜택에 대한 새로운 클레임(NIC)을 유효하게 제출했습니다. 그후, 고용안전부("Division")는 원고에게 지불할 주간 혜택이 \$ 임을 결정하고, 원고가 설정한 수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불할 수 있는 실업보험 혜택의 최대 금액은 \$ 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클레임은 마지막 취업에서의 퇴직 문제에 대한 판결자에게 회부되었습니다. 판결자는 원고가 혜택을 받기에 (실격이라는) (실격이 아니라는) (자격이 있다는) (자격이 없다는) 서류 번호의 판결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고용주)는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문제는 항소 번호에 따라 항소 심판(이름)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들이 청문회에서 항소 심판 앞에 출석하였습니다:
일, 항소 심판은 N.C. Gen. Stat. § 96-14.9(c)에 따라 원고가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에 (실격이라는) (실격이 아니라는) (자격이 있다는)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고용주)가 항소하였습니다.

발견한 사실 :

- 원고는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클레임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부와 함께 일 신청을 했으며, 본부에서 요청한 대로 취업 사무실에 보고를 계속하고, N.C. Gen. § 96-15(a)에 따라 혜택 클레임을 신청하였습니다.



고위당국결정번호
4페이지중 2

법의규정:

노스캐롤라이나의고용안전법은개인이일시적으로총체적인또는영구적으로총체적인
장애를근거로다른주또는연방법에따라혜택을받고있거나신청하고있는주중에는일을
할수없음을규정합니다.

N.C. Gen. Stat. § 96-14.9(c).

법의결론:

아래서명자는적합하고믿을만한증거및발견된사실들을통해다음과같은결론을내
립니다

앞서언급한내용대로,항소심판의결정은(확인되어야/
뒤바뀌어야/수정되어야)합니다.더나아가,원고는실업급여혜택수혜에대해(자격이있습니다)
(자격이없습니다).

결정:

항소심판의결정은(**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로끝나는주(들)의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자격이있습니다**.
(로끝나는주(들)의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자격이없습니다**.

평가위원회의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항소에참여하여이결정에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우편 발송 후 삼십(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팜플렛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팜플렛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www.des.nc.gov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4 페이지 중 4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년 6월 30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